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32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백혜련·정성호·이재관

윤종군 • 이기헌 • 문진석

안태준 • 용혜인 • 민병덕

이재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받을 길이 없음.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현행법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와 같은 체납조세 분납제도의 마련이 시급함. 동 특례는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

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함.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9조의14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1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4(채무조정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직전 5 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 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 2.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 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신청일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 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 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 지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 1. 신청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 2. 신청일 현재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 3. 신청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 ①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제99조의14(채무조정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서 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률」 제72조제5항에 따라 채무 조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 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 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 다) 직전 5년 이내에 「조세 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 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 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2.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 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이 없는 사람

-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 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 다.
-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 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 <u>납 허가</u>
-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 (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 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 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 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 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 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신청일 당시 해당 거주자 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 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 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 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 여야 한다.

①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 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 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 8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9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 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9)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 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 다.
- 1. 신청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 2. 신청일 현재 강제징수가 종 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 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 납액
- 3. 신청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 우 그 체납액
-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체납액

①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